

수원지방법원 2017. 9. 20 선고 2017가단508273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인수 등 청구의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

피고A

변론 종결2017. 8. 9.

판결 선고2017. 9. 2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. 1. 27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원고는 2008. 5. 8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, 원고와 피고는 2011. 1. 27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

251,420,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사실,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, 2, 갑 제2호증, 갑 제4호증의 1, 갑 제5호증, 갑 제7호증의 1,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피고에게 부과될 과징금의 액수가 너무 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한다고 주장하나,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고, 달리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권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.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김선영

별지